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8. 8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4. 8. 10

다. 상정일자 : 제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4. 8. 1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김방옥)

가. 제안이유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2. 12. 8)」·「동법시행령(93. 6. 24)」·「동법시행규칙(93. 7. 31)」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규칙」, 「부산직할시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부여(안 제2조)
- 사업자 또는 주민의 기본적 책무 부여(안 제3조 및 제4조)
-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 주민, 단체, 재활용사업자 등으로서 15인이내의 재활용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민간에 의한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또는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등 자율적인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민간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법 제15조 및 제5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각종 공해문제로 말미암아 시민의 건강과 정서에 막대한 지장과 불만의 요소를 최소화하여 삶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개인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이를 취급하는 업소 등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책무, 주민의 책무 그리고 위반시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재석위원 12명중 전원찬성)